

	<h1>보도자료</h1>		
	배포일시	2021. 9. 13.(월) / 총 6매(본문3, 참고3)	
담당 부서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담당자	• 과장 유상철, 사무관 김일 • ☎ (044) 201-4655, 4657	
보도일시		2021년 9월 1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방송, 인터넷은 9. 1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 민간참여 활성화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9월 13일 지정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

-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 '12~'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을 수주(8.6%), 등록업체 170개 중 10개 내·외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5.9%)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 지적재조사사업 공정별 추진체계 >

지구계측량	일필지측량	면적측정 및 계산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경계조정.협의	확정경계점 설치	경계확정측량	지정.확정.작성	지상경계점 등 등록부 작성	이의신청 및 성과물 작성
책임수행기관	민간업체			책임수행기관	민간업체	책임수행기관			

-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 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이번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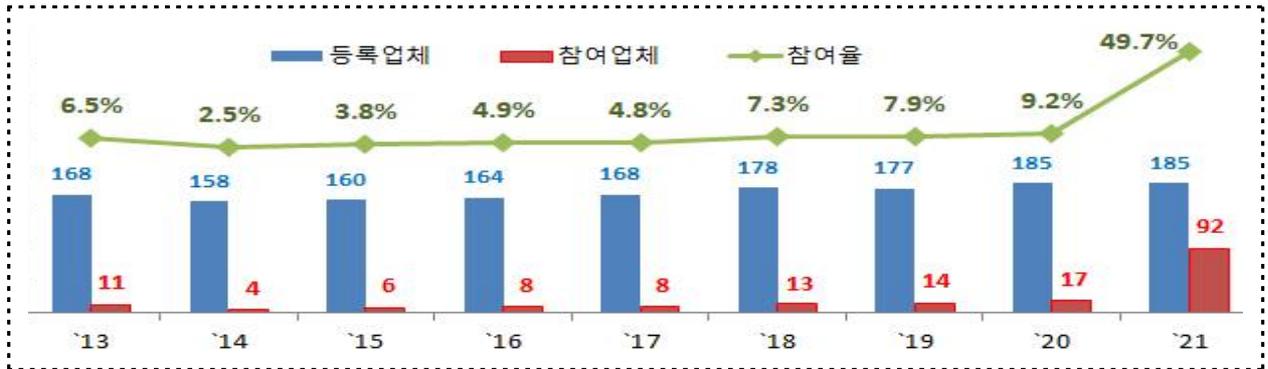
【 책임수행기관 지정 추진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21.6.23. 시행) ❖ (21.06.23.)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 ❖ (21.07.06.) 책임수행기관 공모(LX공사 단독 신청) ❖ (21.08.09.) 책임수행기관 적격성 심사 ❖ (21.08.23.)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21.09.13.) 책임수행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대폭 향상되었고,

- LX공사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 과정 없이 업무공정을 분담하여 집행함에 따라 사업지구별 공기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 통상 매년 5~6월경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하였으나, 금년은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을 통해 2~3월경 지적재조사측량 착수



-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면서,
-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되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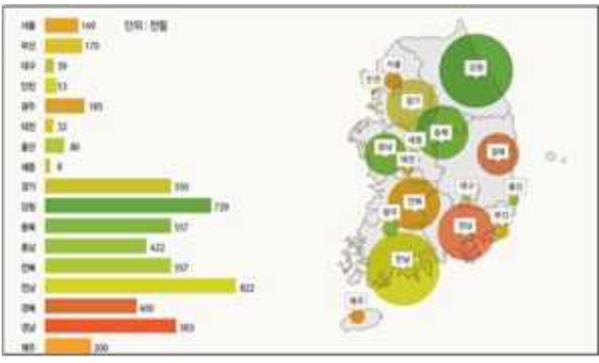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김일 사무관(☎ 044-201-46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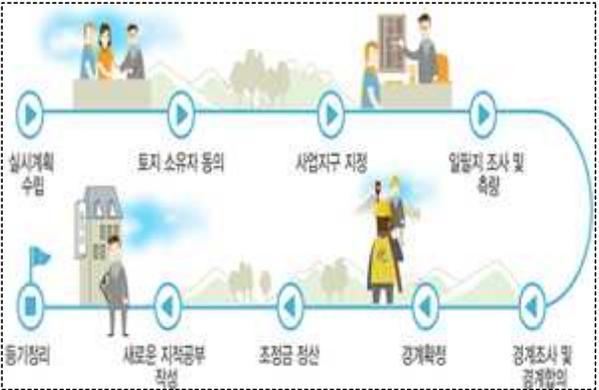
*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종이 지적도>	<지적불부합지 현황>
	
<p>☞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p>	

- (사업내용)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 필지 (전국 3,743만 필지의 14.8%)	'12 ~ '30 (19년간)	1조3천억원 ('12년 예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1. 9. 16. 제정)

- (추진체계 및 절차) 국토부(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 시·도(지구 지정), 시·군·구(경계확정, 조정금산정), 지적측량수행자(일필지조사 및 측량)

<사업추진체계>	<절차도>												
<table border="0"> <tr> <td>중앙지적 재조사위원회</td> <td>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td> <td>기본계획수립, 예산, 사업관리</td> </tr> <tr> <td>시·도 지적 재조사위원회</td> <td>광역자치단체 (지적재조사지원단)</td> <td>종합계획수립 사업지구지정</td> </tr> <tr> <td>경계갈절·지역 재조사위원회</td> <td>지방자치단체 (지적재조사추진단)</td> <td>실시계획수립 사업추진</td> </tr> <tr> <td></td> <td>지적측량수행자</td> <td>일필지 조사· 측량</td> </tr> </table>	중앙지적 재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본계획수립, 예산, 사업관리	시·도 지적 재조사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지적재조사지원단)	종합계획수립 사업지구지정	경계갈절·지역 재조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조사추진단)	실시계획수립 사업추진		지적측량수행자	일필지 조사· 측량	
중앙지적 재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본계획수립, 예산, 사업관리											
시·도 지적 재조사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지적재조사지원단)	종합계획수립 사업지구지정											
경계갈절·지역 재조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조사추진단)	실시계획수립 사업추진											
	지적측량수행자	일필지 조사· 측량											

【 추진배경 및 목적 】

①사업예산 증가(137→700억)에 대한 탄력 대응, ②지구별 사업공기 단축(2→1년) 및 ③민간측량수행자 참여 확대(7→35%이상)를 통한 산업 활성화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19.09.16) 책임수행기관 운영계획(안) 마련 T/F 구성(국토부, LX, 협회)
- ('19.12.03) 책임수행기관 정책설명회 개최(지자체, 학계, LX, 민간 등)
- ('20.02.17)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 추진(10개 지자체)
- ('20.12.22) 책임수행기관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책임수행기관제도 주요 내용

① 상생·협력체계 마련

- (지적재조사측량 분담) 사업지구별 지적재조사 수행자 업무공정 중 책임수행기관부분과 민간부분을 구분하여 분담업무 수행
 -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일필지측량과 면적측정 부분만 민간업체 (35~40%)에서 수행, 나머지 공정은 책임수행기관(60~65%) 전담 수행
- * 구체적인 추진절차와 공정 분담비율은 조사·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

지구계 측량	일필지 측량	면적측정 및 계산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경계 조정·협의	확정 경계점 설치	경계측량	지정·조정·작성	지상 경계점 등·등록부 작성	이의신청 처리 및 성과물 작성
책임수행 기관	민간업체			책임수행 기관	민간업체	책임수행기관			

② 책임수행기관 공적역할 확대

- (전담팀 운영) 책임수행기관은 지역본부 단위에 지적재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경계협의·조정, 사업관리 등에 집중 투입
- (사업지원체계 마련) 책임수행기관은 사업관리부서와 별도로 Help-Desk, 기술자문단 등을 설치하여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
- (기술 및 교육지원) 민간업체 수행자의 지적재조사 전문기술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③ 안정적 사업추진 지원

- (효율적 인력 운영) 일반 지적측량업무 수요가 적은 매년 1~3월에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지적재조사측량 착수·수행
 - * 기존에는 지적측량수행자 선정과정을 거쳐야하므로 매년 5월 이후 착수 가능
- (전문성 확보) 지적재조사 공정 중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함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및 민간업체 상호 전문성이 확보되어 공기단축 기대
 - * 책임수행기관이 경계협의·조정을 전담함으로써 대민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
- (사업관리 내실화) 책임수행기관이 지자체에 최종 성과물을 납품함에 따라 사업지구에 대한 총괄 사업관리 등 책임수행

□ 기대 효과

- (사업기간 단축) 일필지측량(민간)과 경계협의·조정(책임기관) 절차를 분리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 (민간산업 활성화) 과도한 경쟁관계를 해소하고, 일부 민간업체의 독과점을 예방하여 민간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 (일자리 창출) 책임수행기관 전담팀 운영에 따른 인력 확충과 민간업체 참여 확대에 따른 신규 인력 등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